

—구미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—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본청 한시기구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부서간 유사기능 일부 조정
- 시민복지회관의 유사기능 통·폐합 및 6급 사업소장 직급 상향 조정

3. 주요내용

- 한시기구 : 명칭변경
 - 읍면동기능전환팀 ⇒ 주민자치과
- 시민복지회관 유사기능 통·폐합(3과 → 2과, △1과)
 - 시민복지회관 교육훈련과(행정5급) + 인력개발과(사회복지5급)
⇒ 사회교육과(행정 + 사회복지5급)
- 한시정원으로 감축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급 상향 조정
 - 행정6급 ⇒ 행정5급(시민복지회관의 감축된 행정5급 상계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
- 자치행정과-2283('04. 3.20)호의 구미시 기구 및 정원조정승인(협의)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유사기능 부서를 통·폐합하는 등 기구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임.
- 한시기구인 읍면동기능전환팀을 명칭 변경하고, 시민복지회관의 교육훈련과와 인력개발과를 통·폐합 및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행정6급에서 행정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.